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 우 진 의원)

의안 번호	22-98
----------	-------

발의년월일: 2022. 9.

발의자: 채우진, 강동오, 권영숙
김승수, 남해석,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보건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구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제5호)
- 나.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2항제6호)
- 다.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행위 제한 (안 제4조제1호,제5호,제6호)

3. 관계법령

-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2. 9. 14. ~ 9. 18. (의견없음)

나. 개정조례안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6.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호 중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동반 출입행위”를 “방뇨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u><신 설></u></p> <p>③ (생 략)</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흡연, 음주, 가무, <u>방노행위</u> 및 <u>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동반 출입행위</u></p>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6. <u>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행위의 제한) ----- ----- ----- ----- ----- ----- -----.</p> <p>1. ----- <u>방노행위</u></p>

<p>2.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5.</u>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u>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u></p> <p><u>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u></p> <p><u>7.</u> (현행 제5호와 같음)</p>
---	--

【관 계 법 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 6.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어린이놀이터(모래놀이장 포함) 보건위생 검사 및 놀이기구 정기점검 비
용 등이 포함된 공원 시설장비유지비, 놀이시설 검사수수료,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료 등 예산은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여(2022년 기준
22,000천원 내외, 연평균 1억원 미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소독 용역(9,429천원)을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모래소독기(11,642천원)를 구입하여 운용 중임.

향후 조례 개정 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비용, 놀이기구 위생관리
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명목으로 소관부서에서 예산편
성 예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박상언
연 락 처	02-3153-9466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